



삼일회계법인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May 15, 2026



Table of contents

01 Tax news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경부,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특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행안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최초 신고 안내	
0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549호, 2026. 4.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8호, 2026. 5. 14.)•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547호, 2026. 4. 21.)•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612호, 2026. 5. 12.)•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76호, 2026. 4. 2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9호, 2026. 4. 30.)•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 5. 8.)	
03 최신 예규·판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제외대상 고정자산 처분수입 판단 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 여부의 판정방법•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수탁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토지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01

Tax news

재경부,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특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을 위한 과세특례 절차 등 세부 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개정 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조특령 §93의 14 신설)
 -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구조 및 투자 대상의 세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구조)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 (투자 대상)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 ○ (투자 비율) 60/100 이상 (30개월 내 투자 완료 필요) □ 전용계좌 운용·가입 등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 납입액 중도인출 가능, 인출시 납입한도 복원 ○ (가입)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중도 양도·환매 시 추징 등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간 기산)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의무 투자기간(3년) 및 과세특례 기간(5년) 계산 ○ (추징 예외)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예외 사유 인정 <p style="text-align: right;">*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필요</p>
〈개정이유〉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소득세법

- 저축취급기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소득령 §216의 3)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에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저축·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투자신탁 ○ 공제부금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서류 제출 의무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개정이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	

행안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월, 9월)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구분	주요 내용
①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 (영 제39조·규칙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현금·계좌입금 - (개선) 현금·계좌입금 +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② 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 (영 제74조·규칙 제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류 외국인 동거가족사항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정보 추가 연계 및 서식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범위: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가입자, 피부양자 정보 등 - 정보 제공시기: 매일
③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 (영 제74조·규칙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립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2026. 7. 1. 시행)에 따라 기후부가 보유한 전산 자료를 제출·연계하는 근거 마련

2)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구분	주요 내용
① 지방 소재 법인 사원 임대주택 취득 시 종과 기준 차등화 (영 제28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종과 및 주택 수 제외 면적기준 등을 지역별로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모든 지역 60㎡ 이하 주택 - (개선) 수도권: 60㎡ 이하 주택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85㎡ 이하 주택 <p style="text-align: right;">*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p>
②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개선 및 신고서식 정비 (영 제78조·규칙 제37조·별지 제3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연면적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수평투영면적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중 태양에너지 설비 수평투영면적을 과세 제외 면적에 추가하는 개정 사항을 사업소분 신고서식에 반영

구분	주요 내용
③ 집단에너지사업자 에너지 공급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영 제10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에너지사업자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 (2026년~2028년)
④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등 (영 제10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 (2026년~2028년) ※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일몰 신설 (2026~2028년, 3년)
⑤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분리과세 신설 (영 제10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유통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 (2026년~2028년) ※ 농수협의 구판시설용 토지 등도 일몰기한 설정 (2026년~2028년)
⑥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영 제10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45%로 설정 ※ 다주택 및 법인은 60% 적용
⑦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 (영 제1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폐기물 신규 과세(2026. 7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대상 범위를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을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하되, - 지방정부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폐기물·재난 폐기물 제외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최초 신고 안내

국세청이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2024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2,547개 다국적기업 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국세청이 안내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p>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개요 등</p>	<p>□ 글로벌최저한세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가능한 제도 <div style="background-color: #fff9e6; padding: 5px; margin: 5px 0;"> <p>글로벌최저한세 과세규칙 (적용순서: ① → ② → ③)</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저율과세되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해당 기업 소재지국에서 부과 ② 소득산입규칙(IRR): 저세율 자회사의 추가세액을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모기업에 부과 ③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①, ②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소재하는 그룹 내 기업들에 부과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며,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에 있는 모기업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 해야 함 <p>□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2026년 6월 30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 있음 •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국내 소재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 발송
<p>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 다만, 정부기업·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 등은 적용 제외됨

구분

주요 내용

신고서 유형·제출방법 등

□ 신고서 유형

1)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 (원칙)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3·54호 서식) 제출
- (예외) 다음 ①, ②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 예외
 - ① 지정국내기업이 그룹을 대표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
→ 다른 국내구성기업은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② 그룹의 해외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외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만,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5호 서식)는 제출

2) 추가세액신고서

-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신고·납부기한까지 추가세액신고서(국조칙 별지 제56호 서식)를 제출하고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함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유형 및 제출의무 요약]

신고서 유형		제출의무
정보 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원칙)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개별적으로 제출 (예외) 상기 ①, ② 참고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	(원칙)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제출의무 없음 (예외) 상기 ②의 경우 제출의무 있음
세액 신고서	추가세액신고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제출

□ 신고서 제출방법

1)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방법(국조칙 별지 제53·54호 서식)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만 가능
- 홈택스에서 전자파일(XML)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2)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제출 방법 (국조칙 별지 제55호 서식)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전자신고 시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3)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제출 방법 (국조칙 별지 제56호 서식)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파일(VSAM)을 제출하거나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구분

주요 내용

신고서 유형·제출방법 등

□ 신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등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 시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 요구 미이행 시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가능)
- 다만, 전환기 사업연도(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2024년 사업연도는 법령상 면제 요건 충족시 과태료 면제
- 또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납부지연가산세 50% 감경

성실신고를 위한 지원사항

□ 신고도움자료·항목별 체크리스트 등 안내자료 제공

-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국가별보고서(2020~2023년 제출분) 및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 제공
-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 중심의 체크리스트 제공
-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 및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 배포 및 외국계기업 위한 별도 안내자료 제공 예정

□ 주요 신고유의사항 안내

- 사업연도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일한 사업연도를 사용해야 함
-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별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유형의 기업(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투자구성기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함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작성 시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폐업한 기업도 포함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능통화로 작성되어야 하는 반면, 추가세액신고서는 원화로 작성되어야 함

0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549호, 2026. 4. 21.)

개정 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하여 환율변동 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8호, 2026. 5. 14.)

개정 이유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며,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의 세부 기준 등을 정하며,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547호, 2026. 4. 2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변동 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교세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30년까지 매년 한살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612호, 2026. 5. 1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교세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76호, 2026. 4. 23.)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9호, 2026. 4. 30.)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그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 5. 8.)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중동전쟁으로 수입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중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 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해당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03

최신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제외대상 고정자산 처분수입 판단 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 여부의 판정방법

(대법2025두35684, 2026. 3. 12.)

쟁점사항

구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되(법법 §4 ③ 5호),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구 법령 §3 ②, 2025. 2. 28. 개정 전, 이하 '쟁점규정'), 이번 판결의 쟁점은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의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3년 이상이나 수용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토지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임.

판결요지

이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쟁점규정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란 '처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로 문언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라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고(대전고법(청주)2024누50583, 2025. 10. 29.),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함(대법2025두35684, 2026. 3. 12. 심리불속행 기각).

시사점

이번 판결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처분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고정자산일지라도, 쟁점규정의 문언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함이 타당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다만 쟁점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또는 처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고정자산까지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난해 초 쟁점규정을 개정하여 고정자산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그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는 처분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범위를 합리화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법령 §3 ② 2호, 2025. 2. 28. 개정 및 부칙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 용시 수탁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토지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조심2026전0208, 2026. 3. 18.)

쟁점사항

현행 조특법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조특법 §30의 6)에서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령 §27의 6 ⑩ 및 상증령 §15 ⑤ 2호 나목, 이하 '쟁점 규정'), 이번 결정례의 쟁점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토지(이하 '쟁점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인 수탁가공업체의 공장용 건물 부지로 무상 임대한 경우, 쟁점 토지를 사업무관자산인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 여부임.

결정요지

이에 대해 이번 결정례는 청구법인과 수탁가공업체가 비록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법인이므로 수탁가공업체에 쟁점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쟁점 토지는 사업무관자산인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점, 쟁점 토지상에 건축된 공장용 건물 또한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임차하고 있을 뿐 수탁가공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건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부속된 쟁점 토지를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쟁점 토지를 청구법인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결정함.

시사점

이번 결정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가업법인이 제품의 임가공 목적으로 수탁가공업체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라도 가업법인의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관련자산이 아니라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시사하므로, 가업법인이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고 무상 임대하는 토지에 해당하거나 또는 가업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는 수탁가공업체에게 임대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를 사업무관자산이 아닌 사업관련자산으로 보아 조특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 6)나 또는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의 2)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5-소득-3913, 2026. 3. 9.)

쟁점사항

현행 조특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는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감면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법 §6 ③ 13호),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공연단체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결정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타 공연단체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부가법 §26 ① 15호)는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고(부가령 §42 1호), 이와 같이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2026년 중소기업 범위 해설, 중기부), '기업' 자체가 될 수 없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됨.

시사점

이번 유권해석은 물적 조직과 인적 조직이 모두 없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인적용역사업자는 '기업'을 전제로 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단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면서 업종별 매출액 요건·독립성 요건과 같은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인적용역사업자와 같이 물적시설과 고용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뿐만 아니라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결정례·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조한철 Partner

han-chul.cho@pwc.com
02-3781-2577

정재훈 Partner

jae-hoon_3.jung@pwc.com
02-709-0296

김태훈 Partner

taehoon.kim@pwc.com
02-3781-2348

조영현 Director

young-hyun.jo@pwc.com
02-3781-9238

이민재 Director

min-jae_1.lee@pwc.com
02-709-8320

신예지 Senior-Manager

yeji.shin@pwc.com
02-709-0659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be](#).